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673호 2020. 9. 22.(화)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179호 남해군 공무원외출장 규칙 1
남해군 규칙 제1180호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1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0-154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 18
남해군 고시 제2020-158호 도로명주소 고시 20
남해군 고시 제2020-15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22
남해군 고시 제2020-161호 남해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도로) 결정(정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23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0-1126호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2
남해군 공고 제2020-1128호 남해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7
남해군 공고 제2020-1166호 남해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 입법예고 40

회 람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860-3045, 행정 3045)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179호

남해군 공무국외출장 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공포한다.

2020년 9월 22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남해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및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군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남해군수(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가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남해군이 분담금을 지급하여 가입한 단체는 제외한다)가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3.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4. 군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군수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 업무는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남해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한다.
-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심사) ①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무국외출장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무국외출장계획은 기존자료 활용 및 중복출장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사전에 공무국외출장 담당팀장, 담당부서장, 행정과장의 협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기준에 따라 중점 심사하여야 한다.

제6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현지 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예정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소속기관과 연락을 유지하고, 출장 목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내실 있게 수집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간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장결과보고서에는 전자항공권(E-ticket) 등 국외출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무국외출장자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그 공무국외출장자의 향후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8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 지급된 경비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이를 환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제5조제1항 관련)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장경비	
						금액	부담기관
	계					천원	

2. 출장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명	계	항공운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제5조제2항 관련)

항목	확인사항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4. 꼭 필요한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새올행정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7. 여러 국가(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	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3.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였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이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3. 감독기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이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 시 산하기관에 비용전가 하지 않았는가?		
	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심사위원 또는 확인자 소 속 :
 직 급(위) :
 성 명 :

(서명)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자 보안서약서 (제6조 관련)

본인은 2020. . . 부터 2020. . . 까지 공무국외출장 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공직자로 근무 중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은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관계 제 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특히 국외출장 중에 국내에서 취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2020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행정복지국 행정과
 직 급 : 지방행정주사
 성 명 : 김 행 정 (서명)

서약집행관 소 속 : 기획예산담당관
 직 급 : 지방행정사무관
 성 명 : 김 정 책 (서명)

[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표준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I.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출장자 인적사항

II.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III.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 예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예 아니오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

IV.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 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남해군 규칙 제1180호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한다.

2020년 9월 22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①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신고인은 신고의 내용이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선, 전자우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제3조(관리대장)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3조, 제5조 및 제10조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련 서류 원본과 대장을 이중캐비닛에 보관하여 비밀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사실조사)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진술서 등의 서류는 신고인 등의 비밀 보장을 위하여 우편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접 출석하게 하여 진술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대질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조사가 완료되면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신고인 보호)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신고인 등과 피신고인은 불이익을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분보장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신고인의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 준수) ① 군수가 조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른 신고서 접수, 보완,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하여 비밀명·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사실조사, 신고보상금 지급 심의 시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숫자 8자의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다른 사람이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신분을 알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신고사항을 조사하거나 심사하는 공무원과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절대로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심사 서류는 회의 종료 후 원본만 남기고 파기하여야 한다.

제7조(피신고인에 대한 조치)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피신고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부조리 신고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그 혐의가 입증된 경우에 시효와 관련한 징계처분과 형사고발은 구분하여 처리한다.

제8조(신고보상금 등) ① 군수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생기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보상금 지급 심사 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2. 신고보상금 지급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신고보상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 조 리 신 고 서(제2조제1항 관련)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연 락 처	
	근 무 처		주 소	
피신고인 (신고대상)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전화번호)		직 위 (직 급)	
신 고 내 용	※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증빙자료				
비 고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불이익 처분 등에 따른 신분보장 요청서(제5조제1항 관련)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급	
	전 화	(사무실)	(휴대폰)	

신청사유 ※ 신청사유는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분보장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20

요청인 (인 또는 서명)

남해군수 귀하

불이익 처분 등에 따른 신분보장 요청서 접수증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급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 요청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남해군 감사부서의 장 ○ ○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4호서식]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심사 요청서

(제8조제1항 관련)

신 고 인	비밀번호
피신고인	비밀번호
신고내용	
사실조사 결과	
보상금 지급기준	
요청인 의견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 받아 그 사실조사 결과 혐의가 입증되었으므로 신고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심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 청 인 : 감사부서의 장 ○ ○ ○ (인)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0-154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7일

남 해 군 수

- 측량성과 고시현황
- 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 4점
- 측량성과고시 내용 : 붙임 참조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기준점) 고시내역

[남해군]

기준점 명칭	번호	원점	지역측지계	세계측지계	표고	경도	위도	설치일	소재지	표지재질	측량성과 모관장소	비고
도근점	19056	중부	153114.43 296791.36	253423.308 296865.963	59.681	128-3-33.9646	34-52-19.7388	2020-08-24	창선면 진동리 1176	표철	남해군청	신 규
도근점	19057	중부	153114.64 296814.36	253423.520 296888.955	57.240	128-3-34.8698	34-52-19.7377	2020-08-24	창선면 진동리 산6-1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도근점	19058	중부	153131.01 296803.95	253439.888 296878.553	52.889	128-3-34.4671	34-52-20.2724	2020-08-24	창선면 진동리 산6-1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도근점	19059	중부	153167.27 296788.64	253476.152 296863.241	53.808	128-3-33.8794	34-52-21.4542	2020-08-24	창선면 진동리 산1-8	표철	남해군청	신 규

남해군 고시 제2020-158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 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7일

남 해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한재로 90-41 외 1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별 도 열 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055-860-3472~3474)에 문의 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9. 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연번	중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대리 92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한재로 90-41	20200828	20090427	산두곡이라는 고개의 동쪽인 동한재(동대)와 서쪽인 서한재(서대)를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울도리 779-9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963	20200813	20090427	창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3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문항리 121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강진로206번길 69	20200813	20090427	강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덕월리 산35-4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1179번길 57	20200807	20090427	남서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7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서양리 83-1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1528번길 42-4	20200813	20090427	남서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2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283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2375번길 13	20200826	2009042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3,7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1141-1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2431번길 71	20200824	2009042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4,3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604, 605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3332번길 37-18	20200825	2009042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3,3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155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1662번길 77-12	20200814	20090427	동부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6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2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동부대로538번길 30-20	20200813	20090427	동부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3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558-5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21번나길 14-55	20200807	20100915	망운로21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두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12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1035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삼이로24번길 106	20200824	20090427	삼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관천리 69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591번길 64	20200826	20090427	서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9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현리 2234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스포츠로287번길 39-28	20200831	20090427	스포츠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8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부윤리 157-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신로1852번길 51-1	20200824	20100915	흥신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5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부윤리 157-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신로1852번길 51-3	20200824	20100915	흥신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5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7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부윤리 157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신로1852번길 51-5	20200824	20100915	흥신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5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8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410-7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46번길 1	20200803	20161209	도시계획도로 신설에 의한 구간변경	

남해군 고시 제2020 - 15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9일

남 해 군 수

- 1. 하 천 명 : 봉천(지방하천)
- 2. 성 명 : 남해군수(지역활성과장)
- 3. 주 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4. 점용목적 : 남해군 LPG 배관망사업을 위한 판매달기 2건
- 5. 점용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1435, 900-1번지(아산교) 및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1435, 424번지(아산대교)
- 6. 점용면적 : 일시점용 24.90㎡ / 영구점용 6.75㎡ (아산교)
일시점용 57.74㎡→5.85㎡ / 영구점용 7.99㎡→5.85㎡ (아산대교)
- 7. 점용기간 : 2020. 9. 9. ~ 영구(아산교)
2019. 12. 20. ~ 영구(아산대교)

남해군 고시 제2020-161호

남해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도로) 결정(정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산308-1번지 일원의 남해군 고시 제2020-145호 (2020.08.19.)로 결정된 내용의 오류가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정정) 하고, 남해군 고시 제 2020-4호(2020.01.09.)로 고시된 실시계획인가와 관련하여 금회 군관리계획 결정(정정) 내용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작성하여 같은 법 제32조 및 제91조와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남해 군관리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9월 15일

남 해 군 수

1. 남해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도로) 결정(정정) 조서 : 붙임1. 참조
2.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개요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전기공급 시설 면적
 - 변경 전 A=58,000㎡(제1발전소 29,000㎡, 제2발전소 29,000㎡)
 - 변경 후 A=57,603㎡(제1발전소 29,000㎡, 제2발전소 28,603㎡) [감A=397㎡]

○ 진입도로(소로3-48호)

- 변경 전 : L=1,580m, B=4.0m(교량 1식 L=68m, B=4.0m), A=15,854m²

- 변경 후 : L=1,580m, B=4.0m(교량 1식 L=68m, B=4.0m), A=15,739m²(감115m²)

라.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건물조서 : 붙임2. 참조

사. 실시계획 인가 승인 조건(변경없음)

아. 관계도면 : 실음생략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4)에 비치】**

3. 관계도면 : 실음생략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열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남해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및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가.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나. 도로 결정(정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 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정정	소로	3	48	4	국지 도로	1,580	산366-8 소2-106	산308-1	일반도 로	전기공급 설비	2017.11.10. (남해군 고시 제2017-121호)	

정정사유서

도로명	정 정 내 용	정 정 사 유	비 고
소로3-48	• 소로3-48 - L=1,580m, B=4m • 면적정정 - A=15,793m ² → A=15,739m ² (감 54m ²)	• 오기에 따른 면적 정정	

<붙임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조사

가. 도로(소로3-48) : 연변 18번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합 계				703,517	15,854						
1	봉화리	산366-8	도	946	51	남해군	-	-	-	-	-
2	봉화리	산366-2	도	298	23	남해군	-	-	-	-	-
3	봉화리	1236-1	답	1,246	39	남해군	-	-	-	-	-
4	봉화리	2185-5	도	2,183	50	국(국토 교통부)	-	-	-	-	-
5	봉화리	1271	답	1,488	7	남해군	-	-	-	-	-
6	봉화리	2156-35	답	58	28	남해군	-	-	-	-	-
7	봉화리	2156-6	답	1,489	11	남해군	-	-	-	-	-
8	봉화리	2156-1	천	232,231	250	국(국토 교통부)	-	-	-	-	-
9	봉화리	1264	답	327	56	조미0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1504-11 백세해운대빌라 1차 비-303	-	-	-	-
10	봉화리	1262	답	1,206	542	김기0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275-7	-	-	-	-
11	봉화리	1261	답	661	135	김영0	남해군 미조면 동부대로 538번길 33	-	-	-	-
12	봉화리	산219	임	15,967	271	김창0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929	-	-	-	1/2
						김창0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356-13 경원프라우드빌 905	-	-	-	1/2
13	봉화리	산221-1	임	32,132	646	김막0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24-10	-	-	-	-
14	봉화리	산364	임	29,715	1,298	김기0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926	-	-	-	-
15	봉화리	산359	임	42,974	3,108	강한0	계룡시 금암동 74 신성2차 미소지움 아파트 211-601	-	-	-	-

남 해 군 공 보

2020년 9월 22일

제 673 호 (27)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16	봉화리	산359-2	임	56,993	2,235	김상0	서울시 중구 다산로 32, 34동 708호 (신당동, 남산타운아파트)	-	-	-	10/19
						김상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63-5	-	-	-	4/19
						김상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00-1	-	-	-	4/19
						김영0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788 대림빌라 302	-	-	-	1/19
17	봉화리	산358-2	임	29,752	330	정경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산90-1 우성아파트 6동 801호	-	-	-	-
18	봉화리	산356-1	임	49,686	변경 전 2,017	난음하씨 친족화	남해군 이동면 난음리 568	-	-	-	1/3
						하민0	부산시 금정구 온천장로 137,908호(장전동 현대성우오스타오 파스텔)	-	-	-	1/3
						하동0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245-23(삼 익크린아파트104- 1104)	-	-	-	1/3
					변경 후 1,902	난음하씨 친족회	남해군 이동면 난음리	-	-	-	6/18
						하덕0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	-	-	1/18
						하덕0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	-	-	1/18
						하민0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	-	-	6/18
						하숙0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	-	-	1/18
						하숙0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	-	-	1/18
						하영0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	-	-	1/18
하종0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	-	-	1/18						

남 해 군 공 보

(28) 제 673 호

2020년 9월 22일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19	봉화리	산308-3	임	70,413	3,263	최예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맷돌로 50,102동 1002호 (보미청광 플러스원)	-	-	-	992/70413
						김주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90-2 석조빌라 302호	-	-	-	1/4
						이효0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73 신반포2지구 아파트 106동 208호	-	-	-	1/4
						최예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맷돌로 50,102동 1002호 (보미청광 플러스원)	-	-	-	992/70413
						우도0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3로 104,2008동 102호 (신영지웰 아파트)	-	-	-	661/70413
						우은0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3로 104,2008동 102호 (신영지웰 아파트)	-	-	-	661/70413
						박미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65길 22,101호 (대치동,유경빌라)	-	-	-	5289/70413
						조정0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대로 2811 106동 801호(신봉동,청구타운)	-	-	-	24793/70413
20	봉화리	산308-2	임	24,793	23	하점0	부산시 부산진구 월드컵대로472번길 50-1(초읍동)	남해군산림조합	남해읍 서변리 172-2	근저당권	-
								남해군산림조합	남해읍 서변리 172-2	지상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21	봉화리	1310	답	149	59	하점0	부산시 부산진구 월드컵대로472번길 50-1(초읍동)	-	-	-	-
22	봉화리	2161	도	430	273	국(국토교통부)		-	-	-	-
23	봉화리	1302	답	615	494	하점0	부산시 부산진구 월드컵대로472번길 50-1(초읍동)	-	-	-	-
24	봉화리	산311-1	임	99,835	51	하점0	부산시 부산진구 월드컵대로472번길 50-1(초읍동)	남해군산림조합	남해군 남해읍 서면리	근저당권	-
								남해군산림조합	남해군 남해읍 서면리	지상권	
25	봉화리	산308-16	임	7,930	594	하점0	부산시 부산진구 월드컵대로472번길 50-1(초읍동)	남해군산림조합	남해군 남해읍 서면리	근저당권	-
								남해군산림조합	남해군 남해읍 서면리	지상권	

나. 전기공급설비 : 연번 2번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합계				280,028	58,000						
1	봉화리	산308-1	임	117,888	43,204	하점0	-	남해군산림조합	남해군 남해읍 서면리	근저당권	-
								남해군산림조합	남해군 남해읍 서면리	지상권	

남 해 군 공 보

(30) 제 673 호

2020년 9월 22일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2	봉화리	산356-1	임	49,686	변경 전 4,917	난음하씨 친족화	남해군 이동면- 난음리 568	-	-	-	1/3
						하민0	부산시 금정구- 온천장로 137,908호(장전동,현 대성우오스타오피스 텔)	-	-	-	1/3
						하동0	부산광역시 남구- 태연동245-23(삼익 크리아파트104-110 4)	-	-	-	1/3
					변경 후 4,520	난음하씨 친족회	남해군 이동면 난음리	-	-	-	6/18
						하덕0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	-	-	1/18
						하덕0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	-	-	1/18
						하민0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	-	-	6/18
						하숙0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	-	-	1/18
						하숙0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	-	-	1/18
						하영0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	-	-	1/18
하중0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	-	-	1/18						
3	봉화리	산311-1	임	99,835	2,260	하점0	부산시 부산진구 월드컵대로472번길 50-1(초읍동)	남해군산 림조합	남해군 남해읍 서면리	근저당권	-
								남해군산 림조합	남해군 남해읍 서면리	지상권	
4	봉화리	산308-16	임	7,930	5,573	하점0	부산시 부산진구 월드컵대로472번길 50-1(초읍동)	남해군산 림조합	남해군 남해읍 서면리	근저당권	-
								남해군산 림조합	남해군 남해읍 서면리	지상권	
5	봉화리	1300	답	456	456	하점0	부산시 부산진구 월드컵대로472번길 50-1(초읍동)	-	-	-	-
6	봉화리	1297-7	전	30	30	하점0	부산시 부산진구 월드컵대로472번길 50-1(초읍동)	-	-	-	-
7	봉화리	1297-8	전	60	60	하점0	부산시 부산진구 월드컵대로472번길 50-1(초읍동)	-	-	-	-
8	봉화리	1297-9	전	50	50	하점0	부산시 부산진구 월드컵대로472번길 50-1(초읍동)	-	-	-	-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9	봉화리	1297-10	전	136	136	하점0	부산시 부산진구 월드컵대로472번길 50-1(초읍동)	-	-	-	-
10	봉화리	1297-1	전	288	288	하점0	부산시 부산진구 월드컵대로472번길 50-1(초읍동)	-	-	-	-
11	봉화리	1297-11	전	202	202	하점0	부산시 부산진구 월드컵대로472번길 50-1(초읍동)	-	-	-	-
12	봉화리	1297-2	전	2,998	713	하점0	부산시 부산진구 월드컵대로472번길 50-1(초읍동)	남해군산림조합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근저당권	-
								남해군산림조합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지상권	
13	봉화리	2160	도	469	111	국 (국토교통부)	-	-	-	-	-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0-1126호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7일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2. 개정 이유
 - 가.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불필요한 공중의 의무 규정 삭제
 - 나. 기타 법령 명칭 변경 및 삭제
- 3. 주요 내용
 - 가. 불필요한 공중의무 규정 삭제(안 제9조)
 -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중을 하여야 한다” →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로 변경
 - 나. 기타 법령 명칭 변경 및 삭제(안 제1조, 제8조제2항)
- 4. 조례안 : 불임참조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0년 9월 27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113, 팩스 055-860-3737
전자우편(이메일) : bemicom@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행정과 행정팀(전화 055-860-31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사무관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수탁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체결 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를 “체결하여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 ----- ----- ----- -----.</p>
<p>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생략)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p>	<p>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 수탁기관----- -----.</p>
<p>제9조(협약 등 체결)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생략)</p>	<p>제9조(협약 등 체결) ① ----- ----- 체결하 여야 ----- -----. ② (현행과 같음)</p>

남해군 공고 제2020-1128호

남해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8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20.1.1시행) 등 상위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전부개정 사유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20.1.1시행)의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 준수
 -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그 외 주요 개정내용 : 운영상 개선·보완 사항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0년 9월 28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30,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957~9, 팩스 055-860-3983
이메일 pkh78@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전화,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농기계관리팀(전화 055-860-3957~9)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20-1166호

남해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7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2. 제정이유

남해군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산지의 개발로 인한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남해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제4조(평균경사도)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 외의 토지로 둘러싸인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일단의 산지를 산지전용으로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조성하려는 경우와 법 제8조에 따라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이미 검토한 경우(법 제8조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검토한 후 전용하려는 산지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평균경사도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0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5도) 이하일 것.

- 2.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다만,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3. 전용하려는 산지의 산사태 위험 및 자연경관 훼손이 심하지 않을 경우(평균경사도 25도 이하) 남해군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5조(입목축적) 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남해군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경상남도 평균성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남해군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으로 구하며, 산불발생·숙아베기·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 시·도별 평균성장률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숙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한다)의 120% 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입목축적조사기준이 검토된 경우에는 입목축적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4. 의견제출

-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 연락처 : 전화 055-860-3083, 팩스 860-3739, e-mail : green74@korea.kr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복합민원팀(전화 055-860-30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